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S&S's Newsletter – 2019 년 09~10 월

고객사 및 독자분께,

S&S 회계법인의 2019년 09~10월 뉴스레터를 소개드립니다.

본 뉴스레터가 귀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 Head office:

8t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Ben Nghe Ward,  
District 1, TP. HCM, Viet Nam

Tel: 84 (28) 39 104 996

Fax: 84 (28) 39 104 998

Web: <http://www.ssaudit.com>

#### Hanoi office:

7th Floor, Vinaconex 9 Building,  
Pham Hung St., Me Tri Ward, Tu Liem Dist,  
Hanoi, Viet Nam

Tel: 84 (24) 62 512 199

Fax: 84 (24) 62 512 201

유용한 정보가 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계법인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목차.....

### 1. 세무 및 세무행정

- 1.1 전자인보이스에 대한 시행규칙 68/2019/TT-BTC (발표일: 2019년 9월 30일)
- 1.2 지분이전에 대한 공문번호 69382/CT-TTHT (발표일: 2019년 9월 4일)
- 1.3 이자비용에 대한 하노이 세무국 공문번호 71443/CT-TTHT (발표일: 2019년 9월 11일)
- 1.4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에 대한 공문번호 78407/CT-TTHT (발표일: 2019년 10월 15일)
- 1.5 건설공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공문번호 4201/TCT-KK (발표일: 2019년 10월 17일)
- 1.5 회사 경영진에 지급된 보수에 대한 공문번호 80200/CT-TTHT (발표일: 2019년 10월 23일)

### 2. 관세

- 2.1 내국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에 대한 공문번호 6218/TCHQ-TXNK (발표일: 2019년 9월 30일)
- 2.2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시행규칙 62/2019/TT-BTC (발표일: 2019년 10월 5일)
- 2.2 수입 후 재수출된 물품 정산에 대한 공문번호 6423/TCHQ-TXNK (발표일: 2019년 10월 9일)

### 3. 투자

- 3.1 투자자본금 및 유동자본금 결정에 대한 공문번호 6524/BKHDT-QLKKT (발표일: 2019년 10월 9일)
- 3.2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 변경에 대한 공문번호 7850/BKHDT-DTNN (발표일: 2019년 10월 24일)
- 3.3 기업등록에 대한 공문번호 7768/BKHDT-DKKD (발표일: 2019년 10월 22일)
- 3.4 대표사무소장에 위임한 입찰계약서 서명에 대한 공문번호 (발표일: 2019년 10월)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목차.....

*3.5 법인의 법적대표자 변경에 대한 공문번호 7492/BKHDT-DKKD (발표일: 2019 년 10 월 14 일)*

### 4. 노동

*4.1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한 공문번호 3650/BHXH-BT (발표일: 2019 년 9 월 30 일)*

*4.2 근로계약서 및 연차 휴가에 대한 공문번호 4554/LDTBXH-PC (발표일: 2019 년 10 월 25 일)*

*4.3 Tet 휴무에 대한 공문번호 4544/LDTBXH (발표일: 2019 년 10 월 25 일)*



## 1.1 전자인보이스에 대한 시행규칙 68/2019/TT-BTC (2019년 9월 30일)

2019년 9월 30일 베트남 재무부는 시행령 119/2018/ND-CP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전자인보이스에 대한 시행규칙 68/2019/TT-BTC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물품, 서비스 공급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주목할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전자인보이스 상 내용과 관련:

- 형식, 시리얼 번호 생성과 전자인보이스간 구분이 용이해짐
- 발행일자는 전자인보이스에 전자서명을 추가한 일자과 동일
- 구매자의 전자서명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기술적 조건 또는 판매자-구매자간 동의 하에 서명 여부를 결정
- 물품, 서비스 명은 베트남어로 표기하며 상품의 대분류가 같아도 카테고리(회사명 등)이 다를 경우 각기 표시 (예: 삼성 휴대폰/노키아 휴대폰)
- 물품 사용권 혹은 소유권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보이스는 등록이 필요한 물품명에 번호/심볼을 표시 (예: 주택의 경우 주소, 면적, 층 수 등)
- 베트남 내 외국인에게 발급한 인보이스의 경우 구매자의 주소는 여권상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이민국 서류상 정보로 대체 가능합니다.

### 2.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대한 적용 관련:

수출시 발행하는 Commercial Invoice의 사용 대신 각 기업은 반드시 전자인보이스를 발급해야 하며 수기로 Commercial invoice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Commercial Invoice는 세관 신고 절차 이후 발행합니다.

### 3. 세무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판매자 관련:

동 시행규칙 제 6조 제 3절에 해당하는 판매자는 높은 수준의 세무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반드시 세무서가 발급한 코드가 적용된 전자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 4. 세일스 인보이스 발행과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법을 사용하며 세무서가 인보이스를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기업, 가정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해당 판매자는 세무서로부터 인보이스를 공급받아 작성합니다.

- 청산 진행중으로 텍스코드 종료 절차에 있으나 자산 청산을 위하여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휴업상태에 있는 기업이 세무서의 휴업일 발표 이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세무서가 전자인보이스 사용을 금지한 경우

### 5. 전자인보이스 오류 수정의 절차와 관련:

- 구매자명이나 주소는 틀렸으나 이외 정보가 올바른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오류에 대하여 공지하고, 세무서에 통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Form No.4 /시행령 119/2018/ND-CP 첨부) 이 경우 인보이스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텍스코드, 금액, 세율, 세액이 틀린 경우 오류를 정정하는 Minute을 작성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보관합니다. 이후 판매자는 상기 Form No.4를 작성해 세무서에 송부하고 새로운 인보이스를 발급합니다.
- 세무서가 정보 오류를 발견할 시 세무서는 판매자에 통지서 (Form No.5/시행령 119/2018/ND-CP 첨부)를 전송하게 되며 판매자는 위 절차에 따라 정정 절차를 취합니다.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6. 세무서에 대한 전자인보이스 정보 전송과 관련:

- 납세자는 기 발행된 인보이스 정보를 직접 또는 서비스 제공자(통신사)를 통하여 세무서에 전송해야 합니다.
- 기업이 상당량의 인보이스를 발급하며 우편/통신/보험/금융/은행/항공/정유 산업 등에 속할 경우, 인보이스 정보 전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약 리스트를 첨부). 이 외 경우 전자인보이스 정보는 발급 시 판매자와 세무서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19년 11월 14일 발효되며, 전자인보이스 필수 적용은 2020년 11월 1일부로 시작됩니다.

## 1.2 지분이전에 대한 공문번호 69382/CT-TTHT (발표일: 2019년 9월 4일)

시행규칙 78/2014/TT-BTC 제 14 조에 따르면 해외투자자(기업)이 베트남 내 기업에 기 투자하였으며 자본금 전액을 개인에게 이전할 경우 투자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 없이 지분이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분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이 판매자(해외투자자-기업)을 대신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분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 결정은 시행규칙 78/2014/TT-BTC 제 14 조 제 2 절을 따릅니다.

## 1.3 이자비용에 대한 하노이 세무국 공문번호 71443/CT-TTHT (2019년 9월 11일)

시행령 20/2017/ND-CP 제 8 조 제 3 절에 의거, 베트남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 차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간 총 이자비용은 당해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총 이자비용이 EBITDA 의 20%를 초과한 경우 손금 불산입)

하노이 세무국에 따르면 상기 규정은 차입 계약서의 서명 일자와 관계없이 2017년 5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부터의 이자비용 중 EBITDA 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은 다음을 따릅니다.

- ✓ 2017년 5월~12월 순이익 계산이 가능한 경우: 5월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EBITDA 의 20%
- ✓ 2017년 5월~12월 순이익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2017년 EBITDA \* 20% \* 8/12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1.4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에 대한 공문번호 78407/CT-TTHT (2019년 10월 15일)

베트남 내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계약서에 학비지급이 명시된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 시 개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대상: 유치원~고등학교까지의 학비
- 조건: 근로계약서에 학비 지급을 명시
- 비용 증빙 서류: 인보이스  
인보이스 발급이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대체서류 확인 필요 (예: 한국학교는 Receipt 로 대체 가능)

## 1.5 건설공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공문번호 4201/TCT-KK (2019년 10월 17일)

국세총국 의견에 따르면 총 계약금액 10 억동 이상의 건설공사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주계약자는 공사 현장이 속한 성의 세무서에 대한 부가세 납부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 주계약자(하노이 설립)가 닌투언 지역 내 공사건설에 대한 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계약 계약금액 전체를 발주자가 부담 시 주계약자는 계약금액 전체의 2%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닌투언 세무서에 임시 신고 및 납부합니다.

## 1.6 회사 경영진에 지급된 보수에 대한 공문번호 80200/CT-TTHT (2019년 10월 9일)

법인세 시행규칙 96/2015/TT-BTC 제 4 조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보수는 손금 불산입됩니다. 단 경영진이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비용 지출에 대한 내역이 있을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2.1 내국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에 대한 공문번호 6218/TCHQ-TXNK (2019년 9월 30일)

공문번호 1909/TCHQ-TXNK (2019년 4월 3일)에 따라 내국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베트남 기업(비관세 지역) <-> 베트남 내국기업간 거래의 경우  
-> 베트남 특혜관세 규정에 일치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 해외 기업 <-> 베트남 국내기업간 거래이나 베트남 기업이 내국수출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 베트남 최혜국 관세 대우 규정에 일치하는 경우 최혜국 대우에 따른 관세 적용

## 2.2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시행규칙 62/2019/TT-BTC (2019년 10월 5일)

본 시행규칙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시행규칙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에 적용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발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해당 절차에 대한 세관의 소요기간을 제시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와 물품 수입에 대한 세관신고서상 HS CODE 가 상이한 경우 세관은 신고서와 수입물품을 검사합니다.
  - HS CODE 는 다르나 수입 물품에 대한 설명이 동일한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수락될 수 있음
  - HS CODE 와 수입 물품에 대한 설명이 모두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반려될 수 있음

따라서 CPTPP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기업은 수출업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생산자의 경우 자체 증명서) 또는 국가 발급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 수입에 대한 상업인보이스가 CPTPP 비가입 국가의 기업으로부터 발급된 경우에도 CPTPP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단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에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 2.3 수입 후 재수출된 물품 정산에 대한 공문번호 6423/TCHQ-TXNK (2019년 10월 9일)

본 공문에 따라 수입 후 재수출된 물품의 부가세 신고의 경우 과납 세액(수입 당시의 부가세) 정산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2016년 7월 1일 전 등록된 재수출 신고의 경우: 과납 세액에 대한 정산은 시행령 83/2013/ND-CP 제 29 조 제 1 절 및 시행규칙 38/2015/TT-BTC 제 49 조 제 1 절, 제 3 절을 따릅니다.
-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1일 이전까지 등록된 재수출 신고의 경우: 과납 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시행규칙 130/2016/TT-BTC 제 1 조 제 3 절에 따라 다음 기에 부가세 공제를 적용합니다.
- 2018년 2월 1일부터 등록된 재수출 신고의 경우: 과납 세액은 다음에 해당 시 환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기에 부가세 공제를 적용합니다.

- 수출기업: 미공제 부가세가 3억동 이상 누적된 경우 환급 신청
- 수출과 내수판매를 병행하는 기업:

\*수출/내수판매에 대한 매입 부가세를 별도 회계처리한 경우 수출에 해당하는 매입부가세가 미공제 금액이 3억동 이상 시 환급 신청

\*매입부가세를 별도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경우 전체 매출액 중 수출비율을 미공제 매입부가세액에 곱하여 해당 금액이 3억동 이상 시 환급 신청

## 3.1 투자자본금 및 유동자본금 결정에 대한 공문번호 6524/BKHDT-QLKKT (2019년 10월 9일)

투자국은 기업의 투자자본금 및 유동자본금을 다음의 정의에 따라 결정할 것을 안내합니다.

- 투자자본금: 이는 투자자의 납입자본금 및 차입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시행령 118/2015/ND-CP 제 2 조 제 15 절)
- 유동자본금: 이는 차입금(해외 차입금 및 베트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 및 기타 주식, 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금을 포함합니다. (시행규칙 09/2016/TT-BKHDT 부록 2 번)
- 총투자자본금: 이는 고정 자본금(토지 보상 및 이주 보상비용,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 비용 등)과 운전자본의 합계 (시행규칙 16/2015/TT-BKHDDT)





## 3.2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 변경에 대한 공문번호 7850/BKHDT-DTNN (2019 년 10 월 24 일)

유한책임회사의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투자계획국은 다음을 참조할 것을 안내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 변경은 관련 국가의 규정을 따라야 함
- 2 인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투자법에 따라 국적 변경 이후 적용될 투자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회사가 베트남 유관기관으로부터 투자결정문(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을 발급받지 않았었던 경우 투자자 국적 변경은 시행령 118/2015/ND-CP 에 따라 IRC 변경발급 절차를 진행함
- 회사는 투자계획국 기업등록부서에 회사 등록정보 변경에 대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시행령 20/2015/TT-BKHDT 부 II-5 번 양식 사용)

## 3.3 기업등록에 대한 공문번호 7768/BKHDT-DKKD (2019 년 10 월 22 일)

본 공문은 기업등록에 관련한 일부 절차를 안내합니다.

- **기업 인수:** 해당 절차 및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기업법 제 195 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78/2015/ND-CP 제 61 조 제 1 절, 제 3 절에 따라 타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ERC 변경분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3 일 내 기업등록부서는 기업등록 데이터에서 피인수기업의 정보를 삭제합니다.

또한 피인수기업의 전 지점, 대표사무소 및 사업장은 피인수기업 기록 말소 이전에 모두 폐쇄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20/2015/BKHDT 제 7 조 제 3 절)

관련 기업의 사원, 투자자, 주주 등은 인수 계약서, 인수기업의 정관을 비준하고 기업법에 따라 인수기업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수계약서는 모든 채권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인수에 대한 비준일자로부터 15 일 내 위 내용을 모든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자본금 납입 / 지분 인수:** 해당 절차 및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기업법 제 26 조 제 2 절 및 시행령 118/2015/ND-CP 제 46 조 제 3 절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3.4 대표사무소장에 위임한 입찰 계약서 서명에 대한 공문번호 7944/BKHDT-QLDT (2019 년 10 월 28 일)

입찰 계약서 서명과 관련 다음 시행규칙은 입찰자가 지점장, 대표사무소 소장에게 서명 위임이 가능할 것을 규정합니다. (01/2015/TT-BKHDT, 03/2015/TT-BKDT, 11/2016/TT-BKHDT)

따라서 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사무소 소장에 입찰 과정에서의 서류(계약서 포함) 서명을 위임할 경우 대표사무소 소장은 본인이 직접 서명 및 대표사무소 인감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이 모든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닙니다.

## 3.5 법인의 법적대표자 변경에 대한 공문번호 7492/BKHDT-DKKD (2019 년 10 월 14 일)

기업법 68/2014/QH13 제 149 조 제 2 절 점 i 에 따라 법인의 경영진(Board of Management)은 경영진 의장의 선출, 해임 등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사장 및 주요 임원의 선임, 해고,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시 경영진은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회의 주체는 경영진의 의장이며 만일 회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의장은 경영진에 소속된 다른 개인에 회사 정관에 따라 의장 업무를 위임해야 합니다. 만일 위임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은 내 다른 개인이 임시 의장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 4.1 내부 파견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 가입 면제 가부에 대한 공문번호 3650/BHXH-BT (2019 년 9 월 30 일)

해외에서 베트남 기업으로 내부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 가입 면제와 관련 베트남 사회보험국은 보건부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행 규정인 2008 년 의료보험법 제 12 조 제 1 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 법인의 관리자이며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의료보험료 납부 대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2014 년 의료보험법 제 1 조 제 6 절에 따라 규정이 추가되었음)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그러나 2018 년 12 월 1 일 발효된 시행령 143/2018/ND-CP 제 2 조 제 2 절에 따라 베트남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의료보험 가입 면제 가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베트남 사회보험국은 2019 년 3 월에 건강부의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건강부의 공식 발표가 없었으므로 의료보험 가입 면제 가능 여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 4.2 근로계약서 및 연차 휴가에 대한 공문번호 4554/LDTBXH-PC (2019 년 10 월 25 일)

2012 년 발표 노동법 제 22 조 제 2 절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대 두 번까지만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후 체결되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두 번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 자의로 퇴사하였으며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고용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정함이 있는 계약 중 선택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증가와 관련, 한 회사에서 5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5 년마다 연차휴가 1 일을 추가 부여받습니다. 연수는 총 근무연수의 합계를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재고용 된 경우 퇴사 이전의 근무기간 역시 근무연수에 포함됩니다.

## 4.3 Tet 휴무에 대한 공문번호 4544/LDTBXH (2019 년 10 월 25 일)

2020 년 Tet 휴무는 2020 년 1 월 23 일부터 29 일까지 총 7 일이며 이는 모든 공무원과 관공서에 적용됩니다. 기업의 경우 2012 년 노동법 제 155 조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총 5 일의 휴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음력기준 12 월 30 일~1 월 4 일 휴무 (양력기준 1 월 24 일 ~ 1 월 28 일)
- 음력기준 12 월 29 일~1 월 3 일 휴무 (양력기준 1 월 23 일 ~ 1 월 27 일)

=====0o0=====